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6. 7. 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6조 관련)

명칭	위치	관할구역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고양시·의정부시·남양주시·파주시·구리시·포천시·양주시·동두천시·가평군·연천군을 포함하며, 제25조제10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해서는 김포시 및 인천광역시 강화군을 포함한다). 다만, 제25조제3항제16호의 사항에 관해서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다만, 제25조제3항제16호의 사항에 관해서는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경기도	인천광역시(제25조제10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해서는 강화군은 제외한다), 경기도(고양시·의정부시·남양주시·파주시·구리시·포천시·양주시·동두천시·가평군 및 연천군은 제외하며, 제25조제10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해서는 김포시는 제외한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제25조제10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서천군을 포함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제25조제10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해서는 서천군을 제외한다). 다만, 제25조제3항제16호의 사항에 관해서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